

청약 철회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청약철회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다단계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보호원 (전화: 02-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 2004-19)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주)스템텍코리아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주)스템텍코리아가 제공하는 소정의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해설자료”를 서면 고지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소비자용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주)스템텍코리아의 등록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등록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주)스템텍코리아에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단계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자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70%, 1인당 6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100%까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stemtechbiz.co.kr) 및 02-3452-7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원 관리 규정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1. 가입절차

- (1)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②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 ③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④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⑤ 법 제42조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5)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다단계판매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제출서류

- (1)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 기재)
-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은행통장 사본 1부
-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

●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다단계판매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 · 이해 하여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원 활동 법규

1. 다단계판매원 기재사항 변경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 승급 및 보상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 (1)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다단계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다단계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5. 영업방해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이었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 등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은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판매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